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제명 변경 및 노무중개·제공플랫폼 특례 신설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76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체계 및 주요내용	5
1. 전부개정의 취지	5
2. 전부개정법률안의 체계	6
3.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10
IV. 조문별 검토의견	13
1. 법률 제명의 변경	13
2. 목적 조문 정비	15
3. 정의 조문 정비	17
4. 고용서비스 제공주체의 책무 신설	20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21
6.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당면취소 사유 정비	29
7. 직업안정기관에 의한 고용서비스	32
8.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정비	34
9. 직업지도에 관한 조문 정비	38
10. 직업소개사업의 대상범위 및 신고제도 정비	40
11.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의무 부여	47
12.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요금 징수 금지	52
13.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종사 제한 의무 부여	55
14.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에 대한 겸업 금지 의무 부여	57
15.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정비	59
16.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관리 강화	64
17. 근로자공급사업자 관리 강화	68
18. 근로자 모집 관련 구직자 보호 강화	73
19.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규정 정비	78
20. 컴퓨터 통신을 통한 사업 운영사이트의 차단·폐쇄조치 등	85
21.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정비	90
22. 노무중개·제공플랫폼에 대한 특례 신설	98
23. 자료협조의 요청	105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18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고용서비스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이에 국민 모두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동시에 각 주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재창업 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 노동중개·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을 고용서비스 주체로 명시하는 한편 각 주체의 기능과 의무를 명시하고,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개선·보완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함.

나. 고용서비스의 제공 대상 및 주체 확대(안 제1조 및 제4조)

고용서비스의 제공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건전한 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안 제5조 및 제45조)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기업(구인자)에 대한 취

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산업분야에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민간과의 협업 사항을 구체화함.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 의무(안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2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 직업소개 사무 종사자의 경우 각각 그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직업소개 사무 종사자는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마.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의무(안 제18조제3항·제4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그 고용한 종사자에게 고용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바.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안 제19조제1항·제2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를 이유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회원제 유료직업소개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구직자 보호 간의 비례를 달성함.

사. 모집에 참여한 구직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28조제1항·제2항)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채용을 빌미로 한 취업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할 경우 해당 모집의 응모자가 모집을 위탁받은 자에게 모집의 위탁·수탁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신고 의무 등 특례조항 마련(안 제40조 및 제41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당사자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운영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함.

Ⅲ.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체계 및 주요내용

1. 전부개정의 취지

현행 「직업안정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2차례의 전부개정('67.3.30., '94.1.7.)과 29차례의 일부개정(타법개정 13회 포함)을 거쳐 지금까지 이른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기존 법률 중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의 조가 많아 새로운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특히 1990년대 후반 규제 완화¹⁾ 이후 직업소개사업 등 민간의 고용서비스기관 수가 급증²⁾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 5장 58개 조문을 7장 54조로 개편하려는 바, ① 제명 및 목적을 변경하고, 국가 등의 책무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고용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기반을 마련하며, ②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하고, 노무중개·제공플랫폼에 대한 신고 의무 등의 특례를 둬으로써 구직자에 대한 보호를

1) 1999년 2월 「직업안정법」 개정 시 직업소개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완화한 사례가 있었음.

2) 2023년 기준으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18,911개소로 2005년(7,029개소) 대비 약 2.7배가 늘었음.
: ('05) 7,029개소 → ('10) 7,834개소 → ('15) 11,675개소 → ('23) 18,911개소

강화하며, ③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에 대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직업 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의무 등을 정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며, ④ 행정제재처분 근거 및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전부개정법률안의 체계

개정안은 현행 「직업안정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구성은 장 7개, 본칙 54개 조문, 부칙 12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먼저, 조문 구성상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① 현행의 각 조문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등을 제1장 총칙으로 종합하여 정비하였고,

②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을 제3장에서 3개의 절로 구분하고, ‘근로자의 모집’은 별도의 장 ‘모집’으로 독립시켜 이동·정비하였으며,

③ 현행 보칙의 내용 중 지도·감독 관련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고, ‘노무중개·제공플랫폼에 대한 특례’를 별도의 절로 규정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균등처우)	제2조(정의)
제2조의2(정의)	제3조(균등처우)
제3조(정부의 업무)	제4조(고용서비스 제공주체의 책무)[신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 소개업무 등)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제6조(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등)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7조(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제1절 통칙	
제5조(업무 담당기관)[삭제]	제8조(담당직원)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제9조(구인·구직의 발굴)
제7조(시장·군수 등의 협력)	
제2절 직업소개	
제8조(구인의 신청)	제10조(구인의 신청)
제9조(구직의 신청)	제11조(구직의 신청)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제12조(직업소개 시 준수사항)
제12조(광역 직업소개)[삭제]	
제13조(훈련기관 알선)	
제3절 직업지도	
제14조(직업지도)	제13조(직업지도)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제1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등)
	제15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제4절 고용정보의 제공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제17조(구인·구직의 개척)	

현행	개정안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제3장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제1절 직업소개사업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제16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현행 제40조의2(교육훈련) 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신설>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 등의 교육)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9조(직업소개의 요금 등)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제20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제21조(겸업금지)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직업소개 시 금지·제한 사항)
제26조(겸업금지)	제23조(직업소개 시 준수사항)
제27조(준용)	제24조(준용)
제2절 근로자의 모집	제2절 직업정보제공사업
제28조(근로자의 모집)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제26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27조(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제4장 모집
	제28조(모집의 원칙)
	제29조(국외 취업자 모집의 신고)
	제30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제3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현행		개정안	
제4장 보칙		제5장 지도·감독 등 제1절 지도 및 감독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5조(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36조의3(청문) 제37조(폐쇄조치) 제38조(결격사유) 제39조(장부 등의 작성·비치)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개정안 제19조로 이동] 제41조(보고 및 조사)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제43조(수수료)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5조(국고보조)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제45조의3(포상금)[삭제]		제32조(보고 및 조사) 제33조(장부 등의 작성·비치) 제34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제35조(청문) 제36조(폐쇄조치) 제37조(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38조(결격사유) 제39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신설> 제2절 노무중개·제공플랫폼에 대한 특례 제40조(노무중개·제공플랫폼 정보 신고) 제41조(노무중개·제공플랫폼 운영 준수사항)	
제5장 벌칙		제6장 보칙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양벌규정) 제50조(과태료)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제4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4조(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45조(자료 협조의 요청) 제46조(수수료) 제47조(권한의 위임) 제48조(국고보조) 제49조(사업자협회의 설립)	
제5장 벌칙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양벌규정) 제50조(과태료)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양벌규정) 제54조(과태료)	

3.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실질적 변경이 있는 부분은 크게 ① 고용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기반 마련, ② 구직자에 대한 보호 강화, ③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관리 강화, ④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하 각 분류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 장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문별로 검토하겠습니다.

가. 고용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기반 마련

첫째, 제명을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안 제명), 이 법의 적용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도 해당됨을 명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부문의 상호협력 규정을 포함함(안 제1조).

둘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 그 주체별로 역할 및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4조), 국가의 업무에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업무 및 고용서비스 평가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5조).

셋째, 고용서비스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위탁 시 공동수행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년도 계약의 체결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나. 구직자 보호 강화

첫째,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고(안 제2조), 모집의 응모자가 모집 위탁사업자에게 모집의 위탁·수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둘째, 노무중개·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40조),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이용약관·이용조건, 노무내용, 노무대가, 이용 수수료 등의 정보를 제공 또는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41조).

다.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관리 강화

첫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등록 신청자 또는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직업소개 사무 담당 종사자’는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8조).

둘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며(안 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거

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직업정보 점검 조치의무를 부여함(안 제26조).

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첫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안 제27조), 현행 행정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1항, 제27조제6항, 제34조제1항제3호).

둘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안 제7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허가받은 직업소개사업 등에 대해서 그 등록·허가를 당연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셋째, 직업소개사업 등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안 제38조제1항제1호),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미복권자에 해당하여 등록·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두지 않도록 하며(안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영구히 직업소개사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였음(안 제38조제1항제7호 등).

IV. 조문별 검토의견

1. 법률 제명의 변경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명).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직업안정법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률 제명에 ‘고용서비스’를 추가하고 있는데,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³⁾를 말함.

이 법은 각 장에 걸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업무내용과 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근로자공급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

3)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9.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안은 법률 제명에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려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주요 규정 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2. 목적 조문 정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목적 조문의 내용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도 해당됨을 명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부문의 상호협력 규정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모든 근로자</u> 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u>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확대하고,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하여 근로자 등의 직업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검토의견

현재 고용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은 근로자⁴⁾뿐만 아니라, 구직자, 학생, 직업훈련생 등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면 모두 해당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목적 조문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등도 이 법에 따른 고용서비스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개정이라고 보여짐.

한편,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상호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다양하고, 이들의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4)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9. (생략)

② (생략)

3. 정의 조문 정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고용서비스’를 정의 조문의 맨 처음으로 옮기는 등 용어 순서를 조정하였고, ② ‘직업지도’의 대상을 “취업하려는 사람”에서 “구직자 또는 학생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③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변경하고, ‘모집’의 주체에 “구인자로부터 위탁 등을 받아 모집을 대신하는 자”를 추가하였으며, ④ 그 외 자구를 정비하였음(안 제2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현행 제9호와 같음)
1. “직업안정기관”이란 <u>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u>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안정기관”이란 <u>고용서비스업무를</u>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u>구인자(求人者)</u> 를 탐색하거나 구직	3.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u>구인자</u> 를 찾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
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
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
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
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
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
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
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
사업을 말한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
· 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
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
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과건사업은 제외한다.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
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업지도”란 구직자 또는 학
생 등이 각자 능력과 소질에 맞
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
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
제공,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업소개사업”이란 직업소개
를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나. 직업소개의 대가를 받고 하
는 유료직업소개사업

6. (현행 제8호와 같음)

7. (현행 제7호와 같음)

6. “모집”이란 <u>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u>	8. “모집”이란 <u>구인자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 등을 받아서 모집을 대신하는 자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u>
--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의 조문의 용어 순서를 조정하고, ‘직업지도’ 및 ‘모집’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① 이 법의 주요내용이 ‘고용서비스’임을 고려하여, 정의 조문의 용어 순서를 조정하고, ② 직업에 관한 상담이나 적성검사를 의미하는 ‘직업지도’의 대상에 “학생”을 추가하며, ③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구직자로 확대하는 한편, 모집 업무의 수탁자도 모집의 주체에 포함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4. 고용서비스 제공주체의 책무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개정안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 그 주체별로 역할 및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안 제4조), 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각 주체별 업무 분담 및 협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조(고용서비스 제공주체의 책무)</u> ① <u>국가는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u> ② <u>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③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는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① 국가의 업무에 (i)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업무, (ii) 직업안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평가업무, (iii)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 및 이를 위한 지도·지원 업무, (iv) 기업의 채용지원 업무를 추가하고(안 제5조제1항제7호·제10호·제11호·제12호),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그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조제2항·제5항·제6항제2호·제7항), ③ 고용서비스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위탁 시 공동수행자 또는 수탁자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다년도 계약의 체결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노동력</u> 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① <u>국가</u> 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인력</u> 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2. (현행 제2호와 같음)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3. <u>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u> 4. 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신 설>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u>근로자 모집</u>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신 설> <신 설> <신 설>	3. <u>구직자 또는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u> 4. (현행 제4호와 같음) 5. (현행 제5호와 같음) 6. (현행 제7호와 같음) 7. <u>고용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업무</u> 8. (현행 제8호와 같음) 9.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및 <u>모집</u>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10. <u>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평가업무</u> 11. <u>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 및 이를 위한 지도·지원 업무</u> 12. <u>일자리 여건을 파악하여 기업의 채용을 지원하는 등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업무</u>
--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 소개 업무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7조(시장·군수 등의 협력) 특별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국내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장(제8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등이 직업안정기관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신 설>

2. 구인·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신 설>

제3조(정부의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현행 제1호와 같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채용행사 등 공동사업 추진 및 일자리 발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복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행하거나 이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

다. <신 설>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① 국가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안 제5조제1항), (i) 국가의 업무에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제7호),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이미 국가의 시책으로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근거를 두고 있는 점⁵⁾, 개정안에서도 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⁶⁾에 비

5)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 4. (생략)

②·③ (생략)

6)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 등의 교육) 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분사무소를 설치·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가 제20조에 따라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제20조에 따라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종사자로 하여금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③ ~ ⑤ (생략)

추어 볼 때,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ii) 직업안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평가업무를 추가하는 것은(제10호),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든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가 수행하는 고용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iii)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 및 이를 위한 지도·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제11호), 민간 부문의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iv) 기업의 채용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제12호), 국가로 하여금 구직자에 대한 지원 업무 외에 구인자인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도 균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5조제2항), (i) 개정안 제5조제2항은 국가가 구직자의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민금융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⁷⁾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7)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등 다양한 기관이

(ii) 개정안 제5조제2항 및 제6항제2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고용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의무와 그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두려는 것이고,

(iii) 개정안 제5조제7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서비스를 중복으로 수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상호 협의 조정 근거로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③ 고용서비스 사업의 공동수행자 또는 수탁자에 대한 평가 및 다년도 계약의 체결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안 제6조제2항·제3항), 수탁자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통하여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고용서비스 산업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다년도 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에 경우에만 하여 체결할 수 있고⁸⁾, 다년도 계약으로 인하여 신규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여하여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임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6.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당면취소 사유 정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현행법은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증 취소의 일반적인 입법례와 동일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u>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u>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u>제1항에 따라</u>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	제7조(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u>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자를</u>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u>제6조제1항에 따라</u> 사업을 공동수행하거나

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 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현행과 같음)
---	-------------------

7. 직업안정기관에 의한 고용서비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개정안은 직업안정기관의 업무 및 담당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현행법 제5조는 안 제47조에 따라 국가사무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⁹⁾, 현행법 제6조의 담당직원에 관한 사항과 현행법 제4조의4의 민간직업상담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문으로 정비하되,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직업지도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안 제8조 및 제9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장 <u>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u> <u>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u> 제1절 통칙	제2장 <u>직업안정기관에 의한</u> <u>고용서비스</u> 제1절 통칙
제5조(업무 담당기관) 제3조에 따른 <u>업무의 일부는 직업안정기관의</u> <u>장이 수행한다.</u>	<삭 제>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① <u>정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u> <u>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u> <u>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u>	제8조(담당직원) ① <u>국가는 직업안</u> <u>정기관의 장이 고용서비스 업무</u> <u>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u> <u>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u>

9)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제4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u>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담당할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 따른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u>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u>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u> ② <u>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제17조(구인·구직의 개척) <u>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구직의 <u>개척</u>에 노력하여야 한다.</u>	는 등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삭 제></u> <u><삭 제></u> ② <u>고용노동부장관은 <u>직업안정기관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고용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u></u> ③ (현행 제4조의4제2항과 같음) 제9조(구인·구직의 발굴) <u>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구직의 <u>발굴</u>에 노력하여야 한다.</u>
--	---

8.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정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구인신청 및 구직신청의 세부사항에 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 ② 직업소개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정리하며(안 제12조), ③ 직업안정기관 공무원 등의 비밀보장의무 규정을 두고(안 제42조), ④ 교통의 발달로 전국 일일생활권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광역 직업소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역 직업소개를 할 수 있도록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행 광역 직업소개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현행 제12조 삭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절 직업소개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u>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u>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	제2절 직업소개 제10조(구인의 신청) ①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u>취업하여 수행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u> ② (현행 제8조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4.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신 설>

제9조(구직의 신청)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상담 또는 직업적성

③ 제1항에 따른 구인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구직의 신청) ①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가 요청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훈련기관 알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직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직업소개 원칙)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직업소개 원칙)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

상담 또는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직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직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직업소개 시 준수사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할 것

2. 구직자가 취업하여 수행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알릴 것

<삭 제>

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광역 직업소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구인자가 희망하는 구직자나 구인 인원을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신 설>

①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삭 제>

제42조(비밀보장 의무)

① 직업안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1조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모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모집의 위탁·수탁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해당 모집의 응모자는 정보공개로 알게 된 사업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9. 직업지도에 관한 조문 정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직업지도의 대상을 ‘장애가 있는 사람’ 외에 ‘장기실업, 학력 등의 부족,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등으로 확대하여 명시하고, ② 초·중등학교 등의 학생에 대한 직업지도 규정을 보다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기능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절 직업지도	제3절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제14조(직업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직업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1. 처음으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2. 육체적·정신적 장애, 장기실업,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u>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u>	제1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등) ① <u>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나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u> ② <u>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할 수 있다.</u>
--	--

10. 직업소개사업의 대상범위 및 신고제도 정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직업소개사업의 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구직자’로 변경하고(안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는 규정을 두며(안 제17조제4항),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장 <u>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u> <u>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u>	제3장 <u>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고용서비스</u> <u>제1절 직업소개사업</u>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u>근로자</u> 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제16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u>구직자</u> 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3.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 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해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해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4. 학교등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구직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해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해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사무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주된 사업소 외에 분사무소를 설치·등록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 분사무소의 설치·등록 절차 및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나. 검토의견

① 직업소개사업의 대상 변경에 대해서는(안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의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자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가 모든 국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점에¹⁰⁾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② 신고 수리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안 제17조제4항),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할 수 있음. (i)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로서, 행정기관의 심사는 첨부서류 제출 여부 등에 대한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반면, (ii)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로서, 행정기관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요건 및 입법 취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포함함.

개정안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실질적인 심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10)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확대하고,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하여 근로자 등의 직업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이 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규정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¹¹⁾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신고 수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규정에 대해서는(안 제17조제3항),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분사무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분사무소별로 1명 이

11)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제3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 제18조,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35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생략)

상 고용한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분사무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분사무소 설치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11.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의무 부여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등록 신청자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②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직업소개 사무 담당 종사자’는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며(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무·연수교육의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u>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 등의 교육)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u>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분사무소를 설치·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u>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가 제20조에 따라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제20조에 따라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종사자로 하여금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일정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실무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제5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규정에 따른 <u>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u>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4항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u>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u>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u>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u>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u>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등에게는 별도의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개정안은 직업소개사업자 등에게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등의 이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② 등록을 마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 사무 담당 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③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마다, 그 종사자는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음.

[표] 개정안에 따른 교육 의무 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실무교육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직업소개 사무 담당 종사자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수교육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마다
	직업소개 사무 담당 종사자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2년마다

개정안과 같이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① 직업소개사업자는 인력을 중개하고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타 업종에 비해서 직업 윤리상의 건전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 ② 직업소개사업과 유사한 공인중개사¹²⁾, 국제결혼중개업자¹³⁾ 등에 대해서도 교육의무에 관한 유사 입법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개정이라고 여겨짐.

12)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⑥ (생략)

1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④ (생략)

12.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요금 징수 금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에는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9조(직업소개의 요금 등)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u>구직자로부터</u> 직업소개를 이유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제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u>구인자로부터</u>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다만, 고시¹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의 금액을 구인자와 구직자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구인자로부터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구직자로부터는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를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로부터 일정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14)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2017. 4. 3., 일부개정]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 (이하 생략)

개정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직업소개 시 구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의 상한액을 책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

13.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종사 제한 의무 부여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외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종사자에 한정하여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③ <u>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u>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 ① <u>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u>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종사자에 한정하여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u>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종사자는</u> 제1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후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 사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해당 종사자 외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도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종사자에 한정하여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소개 종사

제한에 대한 의무 주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추가하고 있음.

[표] 직업소개 사무의 종사 제한의무

의무 주체	의무의 내용	
	현행	개정안
유료직업소개 사업자	없음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종사자에 한정하여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게 할 것(안 §20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할 것(현행 §22③)	현행과 같음(안 §20②)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직업소개 사무를 한 경우 그 종사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¹⁵⁾하고 있는데 반하여, 해당 종사자의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5) 「직업안정법」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②·③ (생략)

14.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에 대한 겸업 금지 의무 부여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로 하여금 결혼중개업 등의 사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던 것에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겸업 금지)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u>경영</u> 할 수 없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21조(겸업금지)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u>수행</u> 할 수 없다. 1. ~ 3.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 포함) 또는 그 종사자는 결혼 중개업, 숙박업, 일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로 하여금 중개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중개업 등 유사 업종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으로, 겸업 금지 의무를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15.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정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안 제23조), 개별 조문에 산재해있는 현행 준수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이동하는 등(안 제23조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3조(직업소개 시 준수사항) 직업소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u>직업소개사업자등은 구직자가 취업하여 수행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구인자로부터 제공받아 구직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릴 것</u>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에 따라 <u>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u>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2.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제시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에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4.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것

5. 제1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에

<u>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u>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할 것</u> <u>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무료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i)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구인자로부터 제공받아 구직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준수사항과, (ii)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②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i)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현행법 제19조제6항제1호), (ii) 구인자사업의 허가·신고·등록 여부 확인 의무(현행법 제19조제6항제2호), ③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체불사업주 직업소개 금지 의무(현행법 제18조제5항)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표]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현행	개정안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구직자에게 근로 조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통보할 것	없음	제23조제1호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제시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	없음	제23조제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제19조제6항 제1호	제23조제3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구인자 사업의 허가·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	제19조제6항 제2호	제23조제4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체불사업주의 사업장에 직업소개를 하지 않을 것	제18조제5항	제23조제5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제6항 제3호	제23조제6호

새로 추가된 ① 개정안 제23조제1호의 내용은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까지 확대하여 법률에 상향한 것이고¹⁶⁾,

② 개정안 제24조제2호의 내용은 현행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서

16)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제7조 각호의 사항

8. (생략)

제7조(직업소개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할 것

2. 구직자가 취업할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것

만 부여한 준수사항이나, 이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보다 구직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여겨짐.

그 외 현행 준수사항을 통합한 개정안 제2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16.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관리 강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안 제25조제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며(안 제25조제3항), ③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직업정보 점검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u><신설></u>	제2절 직업정보제공사업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6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방법, 그 밖에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변경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제2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이하 “직업정보제공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신 설></u>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제시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②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제39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정보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2024년 11월 기준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1,434명으로 2006년(300명) 대비 378% 증가하였음.

[표] 직업정보제공사업체 현황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4. 11.
300명	591명	1,145명	1,305명	1,434명

※ 1) 조사시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2) 자료: 고용노동부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직업정보 점검 조치 의무 부여에 대해서는(안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i)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ii)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직업정보 점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전문성·윤리성을 제고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한 감독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② 신고 수리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안 제25조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이 법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규정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¹⁷⁾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신고 수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이라고 보여짐.

17) 행정기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등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함. → 각주 15) 참조

17. 근로자공급사업자 관리 강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안 제27조제1항 후단), ②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6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제27조(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건설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u><신 설></u>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2.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외의 사람을 공급하지 않도록 할 것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국외 사업자의 경우는 국내 제조업·건설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① 변경허가와 관련하여(안 제27조제1항), 현행법은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이 없으나, 개정안은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허가제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허가사항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시행령에도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¹⁸⁾

18)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2. 근로자 공급계획
3. 공급대상사업체수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자의 명칭
2. 사업소의 소재지

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필요한 개정으로 보여짐.

②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대해서는(안 제27조제6항), 근로자공급사업자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외의 사람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이미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¹⁹⁾에서 동 준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있음을 감안할 때,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보여짐.

③ (생략)

1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제42조 관련)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조합원 외의 사람을 공급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18. 근로자 모집 관련 구직자 보호 강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모집 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변경하고(안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② 모집의 응모자가 모집 위탁사업자에게 모집의 위탁·수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모집 위탁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안 제28조제2항),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안 제54조제3항제4호), 정보를 받은 응모자는 해당 사업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안 제42조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안 제52조제4호), ③ 모집 방법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현행 제31조제2항 삭제).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장 제2절 근로자의 모집 제28조(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u>근로자</u> 를 모집할 수 있다. <신설>	제4장 모집 제28조(모집의 원칙) ① 모집을 하는 자는 문서·방송·정보통신망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거나 취업설명회 또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u>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u> 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 ② 구인자로부터 위탁 등을 통해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

모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는 자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할 경우 해당 모집의 응모자는 모집을 위탁받은 자에게 모집의 위탁·수탁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국외 취업자 모집의 신고)

① 국외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방법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하는

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신 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5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자와 그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모집의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비밀보장 의무)

③ 모집의 위탁·수탁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해당 모집의 응모자는 정보공개로 알게 된 사업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2조에 따른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

제5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의 위탁·수탁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나. 검토의견

① 모집 대상의 변경에 대하여(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현행법은 모집의 대상이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모집의 응모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현행법 제34조²⁰⁾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²¹⁾에 의하면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 구인광고를 한 자는 판매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 구인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의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모집 관련 구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음.

② 모집 응모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안 제28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52조제4호, 제54조제3항제4호), 개정안은 모집응모자가 모집위탁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수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를 요청

20)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도5995 판결

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제공 의무, 해당 사업 정보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거짓으로 채용업무를 대행했다고 취업지망생을 속여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²²⁾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모집과 관련된 구직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짐.

③ 모집 방법 등에 대한 개선권고 절차에 대해서는(현행 제31조제2항 삭제), 현행법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권고 절차 중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려는 것임.

모집방법 개선 권고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할 경우 모집기한의 경과 등으로 권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22) 세계일보, [청춘에 희망을!] 취준생 두 번 올리는 취업사기..."일자리 구하기도 겁나". 2017.7.5. 보도. (최종검색일: 2024.12.18.)

19.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규정 정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현행 직업소개사업 등에 대한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익 위해성 여부’를 삭제하고(안 제34조제1항 본문),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허가받은 직업소개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등록·허가를 당연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4조제1항 단서), ③ 직업소개사업 등의 임원이 이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등록·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임원 교체기간을 현행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안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 ④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4조제1항제3호), ⑤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⑥ 폐업신고기한을 폐업한 날부터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u>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u>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u>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u>1개월 이상</u> 주어야 한다. <신설>	제34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8조제1항제78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u>3개월 이내에</u>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

①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35조(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

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

의 폐업신고)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u>7일</u>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 폐업신고)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u>30일</u>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나. 검토의견

① 등록·허가 취소 요건 정비에 대하여(안 제34조제1항), 현행법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 등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i)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ii) 직업소개사업의 임원 등이 이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iii)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덧붙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함께 만족하여야만 가능함.

개정안(안 제35조제1항 본문)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i) 공익의 위해성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하여 행정청이 자의적인 처분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 (ii) 수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처분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

② 당연 취소 사항 추가에 대해서는(안 제34조제1항 단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허가받은 직업소개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등록·허가를 당연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례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③ 결격사유 해당 임원의 교체 기간에 대해서는(안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 개정안은 직업소개사업 등의 임원이 이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등록·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임원 교체기간을 현행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있음. 이는 조속히 임원 결격사유를 해소하게 하려는 취지로, 직업소개사업 등과 유사한 중개업무를 하는 결혼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원의 교체기간을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²³⁾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④ 무실적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안 제34조제1항제3

2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입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24. (생략)

② (생략)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8. (생략)

② ~ ④ (생략)

호),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의지나 실적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음.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4)에서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입법의 의의가 있음.

⑤ 폐업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에 대해서는(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개정안은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

24)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제42조 관련)

가. 직업소개사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1)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36조 제1항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		경고	등록취소(경고 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 적용)	
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		경고	사업정지6개월	

[별표2]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나. 근로자공급사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	허가취소		

는 것으로,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이는 일반적인 입법례²⁵⁾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⑥ 폐업 신고기한 연장에 대해서는(안 제44조), 개정안은 폐업 신고기한을 폐업한 날부터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있는데, 폐업 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신고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²⁶⁾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취지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25)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⑥ (생략)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 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⑧ (생략)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⑩ ~ ⑬ (생략)

26) 「직업안정법」 제5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4. (생략)

③ (생략)

20. 컴퓨터 통신을 통한 사업 운영사이트의 차단·폐쇄조치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무허가 직업소개사업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폐쇄조치의 방법에 ‘컴퓨터 통신을 통한 사업 운영사이트의 차단·폐쇄조치’를 추가하고(안 제36조제1항제4호), 간판 제거 및 시설물의 봉인(封印) 등의 조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폐쇄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제36조(폐쇄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u>반드시 필요한</u>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u>필요한</u>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4. 컴퓨터통신을 통해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사이트 차단 및 폐쇄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신고·등록·허가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소의 간판 제거, 시설물 등의 폐쇄조치를 할 수 있음.

개정안은 ①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행하는 폐쇄조치 방법에 ‘컴퓨터 통신을 통한 사업 운영사이트의 차단·폐쇄조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정지명령 등을 받고도 온라인으로 직업소개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차단·폐쇄조치를 통해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보처리를 정지·제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므로²⁷⁾,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폐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② 개정안은 간판 제거 및 시설물 봉인 등 폐쇄조치를 행정상 강제로 보고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상 강제란 행정청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자력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종류에는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즉시강제, 강제징수가 있음²⁸⁾.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생략)

28)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중 ‘직접강제’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고,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 행정청이 미리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것으로, 안 제36조 제1항(현행 제37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는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개정안은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2조²⁹⁾를 적용하

-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지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9)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 ③ 직접강제의 예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

도록 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 기간 부여와 함께 불이행 시 조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어 처분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무 이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

다만,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기본법」이 적용된다는 점³⁰⁾에서 개정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중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행정기본법」 제32조)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행정목적의 달성할 수 없거나 이미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즉시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의 달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기본법」 제33조의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0)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정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현행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추가하고(안 제38조제1항 본문), ② 직업소개사업 등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며(안 제38조제1항제1호), ③ 사업의 등록·허가 취소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며,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유를 추가하며(안 제38조제1항제6호), ④ 성매매처벌법, 풍속영업규제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구히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7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u> 받을 수 없다.	제3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제16조, 제17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u>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u>피한정후견인</u>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u>피한정후견인(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u>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신 설>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제1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제2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업소개 사무담당자로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	---

나. 검토의견

① 현행 결격사유의 대상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제38조제1항 본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직업정보제공사업’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인터넷을 통한 직업정보제공의 파급효과, 허위 구

인광고 게재 등의 문제 발생 등을 고려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봄.

② 행위능력 있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 제외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제38조제1항제1호)은 직업소개사업 등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피한정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인데,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으로 하여금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음³¹⁾.

따라서 민사관계에서 발생한 한정후견개시의 사실만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처럼 직업소개사업 등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31)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참고로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격기본법」에서도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도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음³²⁾.

③ 재등록·허가 기간 완화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등의 등록·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등록·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제39조제1항제6호)은 제한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영업 취소 후 재허가 등의 제한기간은 소비자의 안전·피해 위험성을 등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바,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결혼중개업, 공인중개사업 등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³³⁾에 비추어볼 때 다소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제한기간을 3년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봄.

32) 「자격기본법」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2. ~ 6. (생략)

3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 5. (생략)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생략)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 7. (생략)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 12. (생략) ② ~ ③ (생략)

한편, 개정안은 제한기간 완화와 함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미복권자에 대하여 등록·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기간을 두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제한기간을 따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유사입법례³⁴⁾가 있고,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에까지 제한기간을 두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보여짐.

④ 「성매매처벌법」, 「풍속영업규제법」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성매매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i)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ii)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iii)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

반면, 개정안은 「성매매처벌법」, 「풍속영업규제법」 또는 「청소년

34)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생략)

4. 제38조의9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략)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① 법인이 아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6. (생략) ③ (생략)

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히 직업소개사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직업소개사업의 대인 업무 특성상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수행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구직자를 성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원천 차단하여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성매매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형·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별도의 경과기간도 두지 않고 영구히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다른 직업군을 살펴보더라도, i) 상대적으로 청렴·품위 유지의 의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를 해소시키고 있으며³⁵⁾, ii) 결혼중개업 운영자도 성폭력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35)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의2. (생략)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 8. (생략)

필요가 있겠음³⁶⁾.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³⁷⁾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³⁸⁾을 내린 바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따라서, 성범죄 위반자에 대한 직업소개사업의 영구 제한은 구직자 보호라는 입법목적 측면 외에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3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벌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 7. (생략)

3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의3. (생략)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8. (생략)

3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2. 노무중개·제공플랫폼에 대한 특례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업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얻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그 계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이하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이라고 함)를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40조),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이용약관·이용조건, 노무내용, 노무대가, 이용 수수료 등의 정보를 제공 또는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2절 노무중개·제공플랫폼에 대한 특례</u> <u>제40조(노무중개·제공플랫폼 정보 신고)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얻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그 계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체결을 중개하</u>

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이하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신고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고, 이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통보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고대상인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받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조(노무중개·제공플랫폼 운영 준수사항) ① 제40조에 따라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최근 3년 이내의 자료 및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1.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이용약관 또는 이용조건을 노무제공자·노무수령자, 노무제공·수령의사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노무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접근 가능한 방식과 형태로 제공
2. 노무제공의사가 있는 자에게 노무내용, 노무제공 이행조건, 노무대가(공제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 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의 사전통지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계약 체결의 중개 등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보존
4. 노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5.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 다른 법령에서 준수하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직업 생활 및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노무제공계약 체결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나. 검토의견

근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소비·유통 등의 경제활동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과업 혹은 일거리를 말하는 플랫폼노동³⁹⁾이 등장하였음.

현재 디지털 플랫폼은 배달(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프리랜서(숨고, 크몽 등)⁴⁰⁾, 가사서비스(대리주부, 미소, 청소연구소, 품 등), 택시·대리(카카오T 대리, 타다 대리 등), 화물운송(짐싸 등)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직업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는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⁴¹⁾되어 있고, 이때 ‘고용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으로 해석되고 있음⁴²⁾.

39) 플랫폼노동이란 i)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조직되거나 중개되는 일자리(ILO), ii) 앱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 중개되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거래(OECD), iii)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형태(한국고용정보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국회도서관, 『팩트북(플랫폼노동 한눈에 보기)』(2020-8호), 20쪽에서 재인용)

40) 생활서비스, 취미레슨 등의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 전문가 등을 이용자와 중개하는 서비스

4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 9. (생략)

42)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따라서, 배달, 프리랜서, 화물 관련 디지털 플랫폼의 대다수는 내용상 직업의 중개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계약을 알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의 대다수는 직업소개사업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에는 해당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⁴³⁾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만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을 알선하는 디지털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른 관리를 할 수 없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을 사업수단으로 하는 사업자라면,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운영정보를 제공·보관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노무중개·제공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에게까지 보호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6. (생략)

다만, 개정안은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의 운영정보에 관한 신고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신고해야할 운영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23. 자료협조의 요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5조제1항), ②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5조제2항), 이 경우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u>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u>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u>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u>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자료 협조의 요청) ① <u>고용노동부장관은</u>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u>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연계를</u>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u>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u> 2. <u>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u>

<신 설>

<신 설>

<신 설>

급여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
국연금 가입 여부(취득 · 상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가입종
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개인식별번호

4. 장애 상태 및 정도에 관한 정
보

5. 북한이탈주민 확인증명서

6.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7. 국가기술 · 전문자격증 취득 정
보

8. 체류자격 등 출입국 정보

9. 범죄사실 및 신원조사에 관한
정보

10. 법인 등기사항 관련 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 군
수 · 구청장은 제16조, 제17조, 제
25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신고,
등록 및 허가와 관련된 자료의
요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
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
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공

	<u>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u>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연계에 대해서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협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i) 자료 제공 요청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정하는 대신 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ii) 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을 ‘고용서비스 업무 수행’으로, 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자료 내용을 사업자등록증명,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iii) 관계 전산망의 이용·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iv)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구인 정보 등을 고용·직업정보 수요자

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24(work24.go.kr)를 운영하고 있음. 개정안은 관계 전산망의 이용·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시스템의 연계·사용 근거를 두어 고용24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국세청은 개정안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업자등록증명’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민원증명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과세정보와는 차이가 있어 ‘사업자등록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8